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, 교육감(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)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이 개정(법률 제20351호, 2024. 2. 27. 공포, 2025. 2. 28.시행)됨. 이에 따라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관련 사항 및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 또한,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,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“심신장애”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행정기본법」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(안 제2조, 제13조)
- 나.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된 “심신장애” 자구 정비(안 제6조의2)
- 다.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(안 제10조 관련 별표)

- 라. 현재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 “장애종류”를 “장애유형”으로 지구 정비(안 제12조)
- 마.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6조 제목 개정 및 제3항, 제4항 신설)
-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은 일반 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8명마다 1명으로 규정
- 바.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 규정(안 제28조의2 신설)
- 학교 내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, 경관영양, 간헐적 도뇨, 인공호흡기 관리 및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한 의료 지원으로 규정
- 사.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 수정(안 제16조, 제29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4. 0. 00. ~ 0. 00.) 예정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5세”를 “5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만 4세”를 “4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만 3세”를 “3세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1호 중 “심신장애로 인하여”를 “사고 또는 신체적·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장애종류와”를 “장애유형과”로, “장애종류가”를 “장애유형이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만 3세”를 “3세”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통합교육을 위한 시설·설비 등”을 “통합교육을 위한 시설·설비 및 특수교육교원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”를 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21조제2항에 따라”를 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8명마다 1명으로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
교육감이 정한다.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학교 내 의료적 지원)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
하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흡인
2. 경관영양
3. 간헐적 도뇨
4. 인공호흡기 관리
5. 그 밖에 교육감이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
정하는 의료적 지원

제29조제1항 중 “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”를 “제23조부터
제28조까지의 규정 및 제28조의2에서”로 한다.

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

가. 중도중복(重度重複)장애: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
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.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
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,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
진단서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
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1)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

2)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지체장애 또는 정서·행동장애

나. 시청각장애: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
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의무교육의 실시)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.	제2조(의무교육의 실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010학년도: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	1. ----- 5세 ----- -----
2. 2011학년도: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	2. ----- 4세 ----- -----
3. 2012학년도: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	3. ----- 3세 ----- -----
제6조의2(위촉위원의 해촉)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	제6조의2(위촉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	1. <u>사고 또는 신체적·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</u> --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배치에 대한 이의) 법 제1	제12조(배치에 대한 이의) -----

7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”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<u>장애종류와</u> 배치를 요구 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<u>장애종류가</u>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<u>장애유형과</u> ----- ----- <u>장애유형</u> ----- ----- -----.
제13조(장애영아의 교육지원)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(이하 이 조에서 “장애영아”라 한다)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,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.	제13조(장애영아의 교육지원) ① 3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6조(통합교육을 위한 시설·설비 등)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, 세면장·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	제16조(통합교육을 위한 시설·설비 및 특수교육교원 등) ① ----- ----- <u>법</u> ----- ----- <u>제21조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다. 다만,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, 연령, 장애의 유형·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,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·대체기구 등의 교재·교구를 갖추어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-. -----

② ----- 법 제21조 제4항-----

③ 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은 법 제1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8명마다 1명으로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제28조의2(학교 내 의료적 지원)

제29조(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)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, 심리·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법 제28조 제9항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흡인
2. 경관영양
3. 간헐적 도뇨
4. 인공호흡기 관리
5. 그 밖에 교육감이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

제29조(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) ① ----- 제28조까지의 규정 및 제28조의2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563